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7. 10. 11(목)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 목 차 】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2
2.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3.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36

<의안번호 제2007 - 27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경제과)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II. 제안이유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 상인조직 육성 등을 통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재래시장, 상인, 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시설물, 편의 시설,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
- 시장의 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안 제15조부터 제18조)

-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4조)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2조)
-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30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33조)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절차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4조부터 39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0조부터 제44조)
- 유효기관 및 경과규정 등(안 부칙)
 -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함.
 - 「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부와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및 협약에 따라 위탁한 재래시장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협약 체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설물관리자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하도록 함.

VI.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 제65조, 제67조, 제74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6조, 제35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제8조, 제14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 「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 「행정절차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세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주차장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소방기본법」 제15조, 「도로법」 제4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추가 소요예산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7. 7. 26. ~ 8. 15(21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 : 없음

IV.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의 제정 의의와 배경

- 종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시행해 오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06. 4. 28)되어 '06. 10.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조례」는 폐지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신규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임.
- 거창군 재래시장의 현실태를 보면, 시설이 노후하고 경영기법의 낙후, 대형유통점과 편의점 등 현대식 유통업태의 출현으로 편리한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금번 법률체계 개편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으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 상인조직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나. 이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장 “총칙”부문에서는 이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 시장 구역의 지정 요건, 시장 내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방법,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사항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한 필요조항이며,
- 제2장에서는 “인정시장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종래에 관행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해 온 시장에 대하여 등록시장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제3장의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은 종래부터 거창 재래시장에 인접하여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점가 등에 대하여도 재래시장 같이 이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상권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은 거창군 관내에 무분별한 임시시장의 개설을 막고 임시시장의 시장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임.

-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은 시장안의 빈 점포 또는 여유매장에 거창군 농어민이 생산한 농·임·축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에 대한 설치지원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를 근거로 규정한 사항으로 거창재래시장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하고, 재래시장의 시설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정부나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7장은 재래시장의 시장관리자 지정·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장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정부나 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임무 등 운영규정을 정하고 향후 소유권문제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의 임시시장개설 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시장 정비사업에 있어 허위보고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임.

○ 이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 권고안」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1) 이 조례안 관련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추가소요예산 없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정도이며, 재원의 종류, 예산확보 방안, 집행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 안 제23조(상인회 설립) 제2항 중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1점포당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를 두고 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3) 안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4항을 보면 “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조문규정은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바, 이 항의 규정은 상인회에 예산지원을 어떤 경우에 지원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등록된 상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은 이 조례안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간 중복성 방지를 위하여 제25조제4항은 “삭제”함이 타당함.

안 제25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③(생략) ④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③(제정안과 같음) ④삭제

(4) 안 제9장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지방세와는 그 성질은 다르다 할지라도 부과·징수나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이행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와 동일하므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둬으로써 조례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조례안에 “(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45조(시행규칙)을 제46조로 하고 제45조(지방세 준용)을 신설

안 제9장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45조(시행규칙)</p> <p>〈신설〉</p>	<p>제46조(시행규칙)</p> <p>제45조(지방세의 준용)</p> <p>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상점가활성화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절차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지시장의 육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당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로의 육성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판매시설의 설치
3.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축제·행사 및 홍보
4. 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5. 그 밖에 관광지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주민, 인근지역 농어민 또는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공공기관·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의 매매·교환을 하기 위한 경우
4. 대규모의 행사에 따라 관람객·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실업자·노년층 및 농어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임시시장의 등록절차·개설기준·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상권가꾸기 자치사업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지역주민·시민단체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제 및 행사 사업
2. 시장 및 상점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관광(테마)거리의 조성사업
3. 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통행 편의를 위한 사업
4. 시장·상점가 및 주변지역의 자율적인 청소·방범 및 거리질서유지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장소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공동시설 :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 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의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상표·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 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연구소·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자문·지도 또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2.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인정시장의 기준)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③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해당구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6조 (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시장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²⁴아니할 때

□ 지방세법

②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한다)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 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
3. 기타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07 - 36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건설과)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7일

II. 제안이유

- 「도로법시행령」이 2007. 1. 5.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조례제명을 “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로 변경함.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조정(안 별표1)
 - 도로점용료 연차별 정액제 조정
 - 평균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산정기준 유지
 - 점용물의 종류 신설 및 수정(안 제1호부터 3호)
 - 돌출간판 신설, 진입로 ⇒ 진·출입로 등
 - 범명변경으로 인하여 근거법규명 수정 및 자구수정(안 비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7. 8. 27~9. 15(20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 : 없음

V.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 그동안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가 적용되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9호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과 같이 건설교통부가 3~5개년도에 걸쳐 평균 38%인상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연도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이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수정은, 법제처에서 그간 법령의 제명을 붙여 써 왔던 것을 2005. 1. 1. 이후 제·개정되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명을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는 것이며,
- 안 제7조 본문 중 점용료 산정기준 조항을 “제4조의 규정에 의거”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5조에 따라”로 바르게 수정하는 것임.
- 안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을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원만한 개정안으로 보여짐.
- 다만,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금년 1월 7일 공포 시행 되었으나, 조례개정시점이 늦었으므로 법령개정 시점과 맞게 조례개정도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유와,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 까지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도로법시행령

[별표 2] <개정 2007.1.5>

점용료산정 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소 재 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중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길이 1미터	1년	지름0.1m 이하	1,150	750	200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가스관 송열관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1,800	1,15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1. 122,000	2. 81,350	3.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4. 58,400	5. 38,950	6. 9,900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시설 안내 표지		7. 1개	8. 1년	9. 101,650	10. 67,750	11.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200	50
		기타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 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레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일	400	300	150
	기타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7.1.5>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1993.8.14>

점용료조정산식(제26조의4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의안번호 제2007 - 33호>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
-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20일

II. 제안이유

-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하여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은 물론 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친환경농업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사업, 기술보급, 과제 발굴,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

-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부정행위를 한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중단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고발 등
-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추진, 광역단지 운영의 총괄을 위해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은 생산자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군수가 위촉함
 - 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IV.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제17조, 제19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9조, 제39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2007년 당초예산에 32억7천만원 확보
매년 25% 증액 총 368억4천만원 투입계획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7. 6. 21~7. 11(21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 : 없음

V.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의 제정의의 및 배경

-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증산위주로 추진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나. 이 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친환경육성법에 의거 친환경육성조례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필요 조항임.
- 안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제1항 본문 중 “심의·의결”과 안 제4조(위원회의 기능) 본문 중 “심의·의결”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나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위원회가 아닌 단체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에 불과하고, “의결”은 단체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보아 지므로 “심의·의결”을 “심의” 또는 “심의·결정”한다고 수정함이 타당함.

안 제3조·제4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p> <p>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심의·의결</u>하기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p> <p>②~⑥.(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기능)</p> <p>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심의·의결</u>한다</p>	<p>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p> <p>①----- -----<u>심의·결정(또는 심의)</u>----- ----- -----.</p> <p>②~⑥.(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기능)</p> <p>-----<u>심의·결정(또는 심의)</u>----- -----.</p>

- 안 제4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4호에서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종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위원의 해촉), 제8조(수당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은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9조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조문의 규정범위를 정하면서 조례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된다고는 보아지나, 이 조문의 경우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규정내용이 포괄적이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두고 정한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는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모형 기본설계 지침」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보아지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같은 조 제2항은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구성에 대한 조항으로 “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회, 기능별협의회,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 전원과 기능별협의회 대표,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대표와 사업단장과 부 사업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회, 기능별협의회, 각 시설·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일반 국민들은 이 조례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사업단은 품목별 생산자 대표·마을대표 등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산자협의회 및 기획·생산·마케팅·시설운영과 교육홍보 등을 주관하는 기능별협의회와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 전원과 기능별협의회 대표,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대표와 사업단장과 부 사업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11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1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p> <p>①(생략)</p> <p>②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회, 기능별협의체, 각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생산자협의체 운영위원전원과 기능별협의체 대표,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대표와 사업단장과 부사업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단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p> <p>③~⑧(생략)</p>	<p>제11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p> <p>①(제정안과 같음)</p> <p>②사업단은 품목별 생산자 대표·마을대표 등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산자협의체 및 기획·생산·마케팅·시설운영과 교육홍보 등을 주관하는 기능별협의체와 각 시설·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p> <p>③~⑧(제정안과 같음)</p>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친환경농업육성법」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親環境農業에 관한 基本計劃과 정책을 수립하고 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 등의 自發的 참여를 촉진하는 등 親環境農業을 振興시키기 위한 綜合적인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親環境農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 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행위
2.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친환경농산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5.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第19條 (親環境農産物 生産·流通支援<개정 2001.1.26>) ①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親環境農産物 生産者,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施設 設置資金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6.9.27>

②親環境農産物 生産·流通에 대한 지원은 親環境農業에 대한 寄與度에 따라 할 수 있다.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1. 제17조의5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2. 제17조의5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의5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17조의5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농산물을 알고 해당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17조의5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第2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5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1.26>

第27條 (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6.9.27>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점검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농업농촌기본법」

第9條 (環境親和的 農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環境保全 機能을 增大시키고 安全한 農産物의 生産 및 消費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環境親和的인 農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第3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9, 2005.8.4>

1. 第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規格品表示·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地理的表示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
2. 第9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또는 地理的産品에 標準規格品 등이 아닌 農産物 등을 混雜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한 者
3. 삭제 <2002.12.26>
4. 第28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또는 檢定을 받은 者
5. 第28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結果의 표시 등을 偽造하거나 變造한 者